

ESG 이슈별 준법경영시스템 개선방안

한국형 ESG 가이드라인의 쟁점분석과 적용포인트

이연우 전문위원 (국제학 박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ESG랩
yeonwoo.lee@bkl.co.kr

ESG 이슈별 준법경영시스템 개선방안

1. 한국형 ESG 가이드라인의 쟁점분석과 적용포인트

2. 기후변화 이행 리스크: 비재무 리스크와 관리비결
3. ESG시대의 지배구조 이슈: 위원회 운영 전략
4. 주주총회와 ESG 이슈 분석: 국내외 동향과 기업 대응
5. 해외기업의 공급망 실사: 산업별 쟁점과 실천 포인트
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 주요 변화와 쟁점 분석

7. ESG와 조직의 변화관리: 기업정책, 인재개발, 그리고 성과관리
8. ESG 투자이슈 ①: 그린에서 확대되는 블루시장
9. ESG 투자이슈 ②: IPO의 ESG 이슈
10. COP27 이슈 분석*(아젠다 발표 전이므로, 상반기에 발표되면 반영)
11. 2022년도, 기업의 대응과 ESG 발전내용 총정리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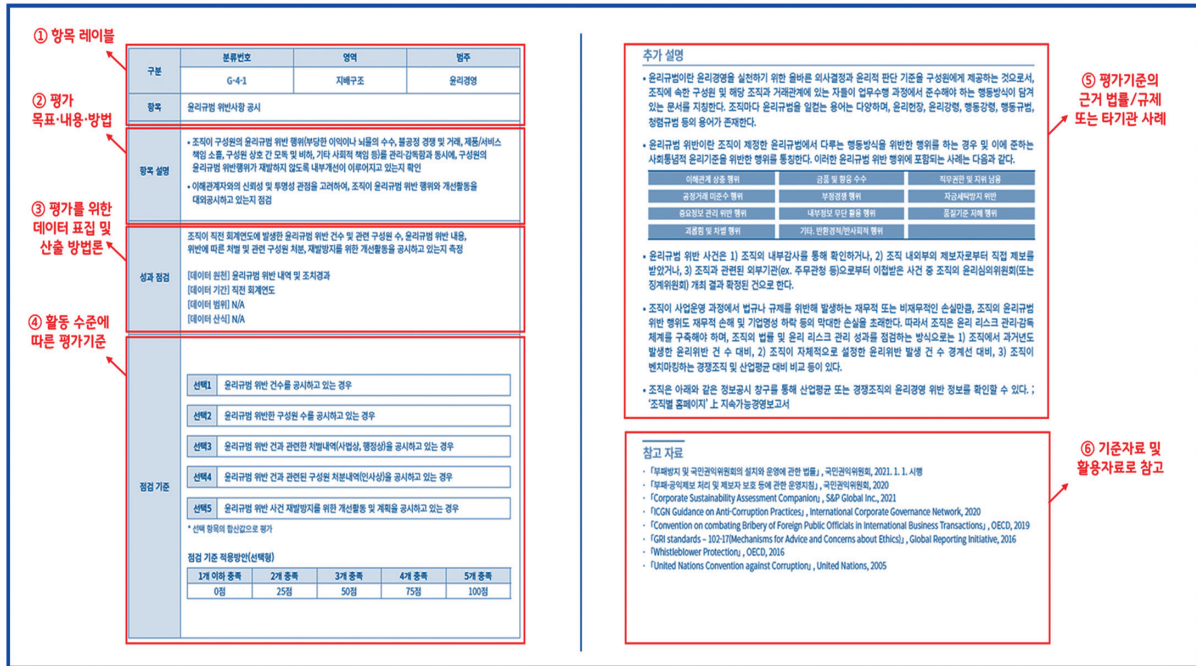
2021년 11월에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협약당사자국총회(COP26)에서 글로벌 ESG 공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설립을 공식화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이 보다 더 쉽게 ESG를 적용할 수 있도록 『K-ESG 가이드라인 1.0』이 공개됐다. ESG 경영과 정보공시가 국내외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기업은 이제 ESG 경영체제로 효율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우선 제시된 국내기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가올 국제기준도 속속들이 모니터링해야 한다. 『K-ESG 가이드라인 1.0』에 대한 여러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자가진단에 매우 유용한 툴이기 때문에 기업은 K-ESG가 제시한 기본 진단항목의 점검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행가능성과 이행효율성에 착안한 “계획(Plan)-이행(Do)-평가(Evaluate)”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산업별 가중치와 기업의 전략적 방향에 맞춰 활용할 수 있다.

1. 자가진단 툴로 유용한 『K-ESG 가이드라인 1.0』

전 세계가 2050년까지의 지구 온도 상승치를 1.5~2도로 낮추기 위해 녹색 전환을 이행하고 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기술변화를 위해 기업은 매우 빠른 속도로 기술발전을 달성해야 하는데, 인류 문명이 300년 동안 보여 온 기술혁명의 수준이 앞으로는 20년이라는 압축된 시간의 속도로 나타나야 한다고 분석했다. 온 인류가 빠른 속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글로벌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작년 COP26에서 글로벌 ESG 공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WEF, TCFD, SASB 등 대표적인 국제기관들이 모여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를 출범시켰다.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발맞추어 우리 기업들이 가속되는 ESG 전환에 뒤처지지 않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2021년 12월 『K-ESG 가이드라인 1.0』를 통해 국내 ESG 표준지표를 제시했고, 2022년 2월 공공기관의 ESG 통합공시 기준을 개정했다. 유례없는 속도로 ESG 경영환경과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해당 지표와 가이드라인을 빠르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

〈그림 1〉 K-ESG 예시: ESG 정보공시 방식



※ 자료: 『K-ESG 가이드라인 v1.0』 발채 후 제작

K-ESG는 국내외 주요 평가기관 10여 곳의 지표와 측정항목을 바탕으로 4개 영역, 27개 범주, 61개 항목으로 표준화시켜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ESG 경영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ESG 각각의 요소별 가이드라인 외에도 기업들에 혼란을 가중했던 정보공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명확히 보여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전까지는 평가사들의 평가 기준과 방법론이 공개되지 않아 기업은 평가모형을 예측하여 실행할 수밖에 없었다면, K-ESG 가이드라인은 점진 기준을 함께 보여주고 있어서 실무에서 적용하기 쉽다. 〈그림 1〉처럼 영역별 진단항목과 점진기준 외에도 추가 설명 및 참고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 ESG 경영체계 수립에 큰 인력과 예산을 들이기 어려운 기업들도 이행항목을 빠르게 파악하고 실천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K-ESG 가이드라인』의 기본 진단항목 정의서는 항목 레이블과 설명자료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로 설명된다.

- 1) 항목설명: 진단의 목적 · 내용 · 방법을 함축적으로 제시
- 2) 성과점진: 항목진단에 필요한 데이터의 소스, 산출 기간, 범위, 산식 등
- 3) 점진기준: 평가 산출방법, 기업의 법/규제 준수 수준 혹은 활동 수준별로 “(도입) 유/무”, “1~3 혹은 1~5 단계”로 평가할 수 있음. 법/규제 위반의 경우는 지난 5개년간 누적된 위반 항목과 위반 수준에 따라 1~3 유형으로 구분하여 감점 적용함〈그림 2 참고〉.

〈그림 2〉 ESG 요소별 평가(점검) 기준 예시

P-1-1 정보공시방식

- ① 1단계: 조직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ESG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경우
- ② 2단계: 조직의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업보고서, 기타 간행물 등에 ESG 정보를 분산하여 공시하고 있는 경우
- ③ 3단계: 조직의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업보고서, 기타 간행물 등에 ESG 정보를 통합하여 공시하고 있는 경우
- ④ 4단계: ESG 정보를 통합한 조직의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업보고서, 기타 간행물 등을 지정된 장소에 비치하거나, 특정 URL에 담고 있는 경우
- ⑤ 5단계: ESG 정보를 통합한 조직의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업보고서, 기타 간행물 등의 발행여부를 '전자공시시스템-자율공시' 사항으로 알리는 경우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E-8-1 환경/법/규제위반

- ① 유형 1: 지난 5개년 간 환경 법/규제 위반내역 중 판결이 확정된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가 사법상 형벌, 벌금, 과료인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당한 경우
- ② 유형 2: 지난 5개년 간 환경 법/규제 위반내역 중 판결이 확정된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가 행정상 처분 중 금전적 처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인 경우
- ③ 유형 3: 지난 5개년 간 환경 법/규제 위반내역 중 판결이 확정된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가 행정상 처분 중 비금전적 처분에 해당하는 시정명령, 시정권고, 경고 등인 경우

점검 기준 적용방안(감점형)

유형 1	유형 2	유형 3
-50점	-30점	-10점

* 환경 법/규제 위반행위란 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과실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폐기물 불법처리와 가중처벌, 노획의 가중, 명명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나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상하수도법」을 통해 처벌되는 행위 등으로써,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제14조를 통해 처벌수위를 규정하고 있다.

S-9-1 사회/법/규제위반

- ① 유형 1: 지난 5개년 간 사회 관련 법/규제 위반내역 중 처벌이 확정된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가 사법상 형벌, 벌금, 과료인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당한 경우
- ② 유형 2: 지난 5개년 간 사회 관련 법/규제 위반내역 중 처벌이 확정된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가 행정상 처분 중 금전적 처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인 경우
- ③ 유형 3: 지난 5개년 간 사회 관련 법/규제 위반내역 중 처벌이 확정된 건수에 대해, 처벌수위가 행정상 처분 중 비금전적 처분에 해당하는 시정명령, 시정권고, 경고 등인 경우

점검 기준 적용방안(감점형)

유형 1	유형 2	유형 3
-50점	-30점	-10점

* 사회 법/규제 위반은 「근로기준법」, 「고용상 연행차별금지 및 고용차별금지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규도유통업체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다.

G-4-1 지배구조: 윤리경영

- ① 요건 1: 이사회 산하 모든 위원회 설치에 정관에 근거하고 있으며, 모든 위원회에 대해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경우
- ② 요건 2: 특정 이사(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산하 모든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 ③ 요건 3: 이사회 산하 모든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는 경우
- ④ 요건 4: 직전 회계연도 중 이사회 산하 위원회 개최 횟수가 평균적으로 3회 이상인 경우
- ⑤ 요건 5: 직전 회계연도 중 이사회 산하 모든 위원회 회의 심의/의결 안건을 다룬 경우

점검 기준 적용방안(선택형)

1개 이하 충족	2개 충족	3개 충족	4개 충족	5개 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윤리규범 위반이란 조직이 제정된 윤리규범에서 다루는 행동방향을 위반한 행위를 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사회통념적 윤리기준을 위반한 행위를 통칭한다. 이러한 윤리규범 위반 행위에 포함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해관계 상충 행위", "금품 및 향응 수수", "직무권한 및 지위남용", "공정거래 미준수", "부정경쟁", "자금세탁방지 위반", "중요정보 관리 위반", "내부정보 무단 활용", "품질기준 저해", "피로임 및 차별", "기타, 반환경적/반사회적 행위"

※ 자료: 『K-ESG 가이드라인 v1.0』 부분 발췌 후 재작성

2. K-ESG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ESG 경영체계 수립방안

기업이 『K-ESG 가이드라인』을 효과적인 자가진단의 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K-ESG를 정부나 평가사와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표준화 지표로서 『K-ESG 가이드라인』은 가중치를 제시하지 않았고 2022년 내에 산업별 가중치가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산업별로 기업의 특정 행위가 사회에 끼치는 피해 혹은 영향력의 크기에 맞춰 ESG별 가중치를 설정하는 것이 정부와 평가자의 입장이라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행효율성 혹은 실제 달성확률이 높은 항목부터 접근하여 개선 속도를 높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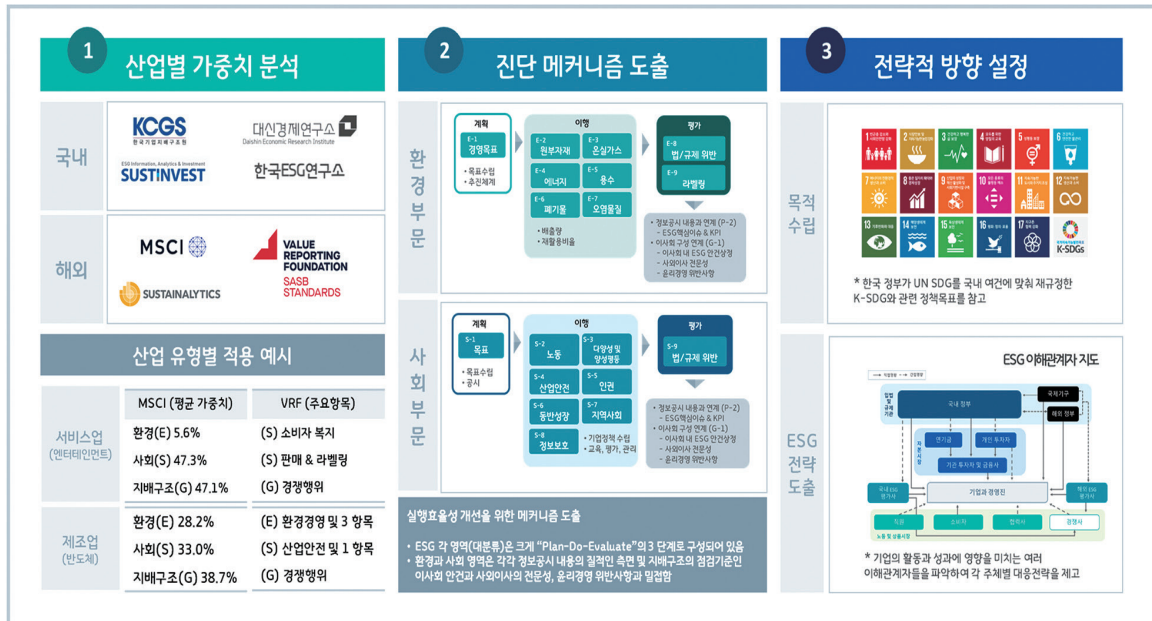
우선 MSCI, SASB, KCGS 등 공개된 가중치를 종합하고 산업 내 ESG의 주요 쟁점과 이슈와 준수 사항을 파악하면서 시작하면 좋다. 그 다음 단계로 27개의 범주와 61개 진단항목 중 상호연계성이 높은 요소를 파악하여 이행 메커니즘을 도출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K-ESG의 기준에 입각한 자가점검 후 ESG 보고체계를 갖추려면 한국형 SDG 중 산업과 기업에 맞는 항목들을 선택하고 세부 실천내용에 대한 계획과 전략을 기업의 여러 이해관계자의 필요에 맞춰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림 3 참고).

진단항목의 연계성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그림 3]처럼 『K-ESG 가이드라인』의 중분류에 속하는 “범주” 항목으로 정보공시(P: Public) 2개, 환경(E) 9개, 사회(S) 9개, 지배구조(G) 6개 범주가 병렬적으로 비슷한 흐름을 갖추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진단 메커니즘 도출” 과정의 예시와 같이 각 범주를 나열해 보면 크게 “계획(Plan)–이행(Do)–평가(Evaluate)” 특성을 갖추고 있다.

기업이 영역별 ESG 경영 목표도출에서 시작하여 공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내 세부 내용을 실천하여 개선하게 된다. 최근 5년 동안의 법적 위반 여부를 공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법과 규제 위반 항목은 개선이행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기업의 ESG 실천수준을 누적해서 보여주는 자가점검의 결과단계로 볼 수 있다. 〈그림 2〉의 E-8-1, S-9-1처럼 관련 법과 규제 위반이 발생하면 이후 5년동안 감점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법률적 위반소지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 3〉 진단 메커니즘 내 환경부문은 이행수준의 결과 항목으로 볼 수 있는 “라벨링” 범주가 있다.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비율에 대한 항목이다. ISO 등 국제인증표준에 준하거나 환경부 등 정부기관을 통해 획득한 친환경 제품의 비율을 공시하는 것으로 ‘산업평균 수준’은 50점에 그치는 3단계, ‘산업평균 대비 20% 높은 수준’을 가장 높은 5단계(100점)는 받는다. K-ESG 가이드라인을 통한 자가점검의 평가결과에 맞춰 기업은 그 다음 이행 연도의 계획과 세부목표를 재정의하여 이행항목들을 점검하면서 계획-이행-평가 사이클을 반복하게 된다.

〈그림 3〉 K-ESG 가이드라인 활용 프로세스



K-ESG를 활용한 ESG 경영 자가진단 메커니즘이 계획-이행-평가라는 큰 메커니즘 안에서 반복적으로 가동되는 것은, ESG 경영활동의 시작점이 법과 규제 준수 점검이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환경과 사회부문의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황과 문제점, 특히 미보유 항목과 미흡한 항목들을 우선으로 관리해야 ESG 관련 재무, 비재무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ESG 컴플라이언스를 27개의 범주를 중심으로 연계성이 높은 부분부터 점검하면 매년 ESG 개선에 대한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이행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ESG 정보공시 및 ESG 경영체계 동향

2022년부터 자산 총액이 1조 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법인은 상반기 중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SG 전 부문을 반영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아직 자율공시 시스템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해외거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국내 공시 관련 규제만 따라서는 안 된다.

일본은 2021년 상반기 ESG 공시 방법을 마련했고, 미국은 ESG 공시 및 단순화법(ESG Disclosure Simplification Act of 2021)이 2021년 6월 8일 미국의회 하원을 통과하면서 (1) 기후 위기, (2) GRI 프레임워크에 따른 ESG 연간 공시 의무, (3) 성별 간 임금 격차, (4) 인적 자원 관리 현황, (5) 인권, (6) 정치자금 지출, 그리고 (7) 세무 이슈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영국은 2025년까지 모든 기업이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정책 도입을 시행하고 있고, 유럽은 2021년부터 연금기금에서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에 대한 ESG 공시 의무를 시행하고 있다.

유럽의 기업지배구조 연구소인 ECGI는 지난 12월에 국가별 환경 및 ESG 공시 의무화 정책 현황을 발표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선진국 외에도 말레이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 총 25개 국가의 정부기관들이 환경 혹은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표 1 참고>.

국가들은 왜 공시 의무화를 시행할까? 공시와 검토자의 편의를 위한 요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UN 책임투자원칙(PRI), 적도원칙,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TCFD) 등 책임 투자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금융기업이 스스로 ESG 준수사항을 갖춘 기업에 대한 투자의무를 갖기 때문이다. 기업의 ESG 경영은 성공적인 해외자본유치와 직결되니 정부가 나서서 공시를 유도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K-ESG 가이드라인』은 MSCI, SASB,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등 국내외의 대표적인 평가지표를 모두 검토하여 표준화시키는 동시에 한국적 특성과 법·제도와의 정합성에 따라 점검기준을 재조성해 기업이 최소한의 기준과 실행방법을 빠르게 파악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제시해주고 있다.

중종 K-ESG의 활용여부와 실효성을 지적하는데, K-ESG는 기존 투자심사나 기업평가 등과 접목해서 사용될 수 있는 보편화한 지침이라는 점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도 『K-ESG 가이드라인』은 기업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된 자가점검 틀이다. 따라서 K-ESG는 충분조건이 아닌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 인식해야 한다. 표준화를 문제 삼기보다, 기본적인 필수항목으로 K-ESG의 27개 범주와 61개 항목이 ESG 경영을 활성화한다는 점을 주목하며 “계획(Plan)-이행(Do)-평가(Evaluate)”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산업별 가중치와 기업의 전략적 방향에 맞춰 활용한다면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 맺음말

올 초 250여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투자자를 비롯한 직원, 소비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ESG에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세 개 부문 중에서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한다. 해당 조사는 ESG 평가기관의 평가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했는데, 안타깝게도 67.7%의 기업들이 불명확한 평가 기준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했다. 대다수 기업들이 기업의 이미지, 주가관리, 채권발행과 같은 자본조달, 그리고 해외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ESG 경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기업의 경영진과 실무자들의 눈에는 해소해나갈 장벽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K-ESG 가이드라인 1.0』은 ESG가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시기에 기업들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환이행을 실천하기에 대단히 유용한 실무적 틀인 만큼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자가점검 틀로 활용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실사가 강화되며 ESG 경영실천이 요구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과도한 설비와 인력 투자비용 등으로 인해 그간 중소기업이 ESG 이행을 상당한 부담요소로 볼 수 있었겠지만 K-ESG가 중소기업을 위해 진단항목 및 단계별 기준을 수정할 예정이니 중소기업도 앞으로는 본 가이드라인을 미리 숙지하면서 체제전환을 앞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국가별 환경 및 ESG관련 기업 정보공시 의무화 추진상황

지역	국가	시행년도	지역	국가	시행년도
아시아	중국	2008	유럽	오스트리아	2016
	홍콩	2016		프랑스	2003
	인도네시아	2012		독일	2016
	말레이시아	2007		헝가리	2016
	필리핀	2011		아일랜드	2016
	싱가폴	2016		이탈리아	2016
	호주	2003		네덜란드	2016
중남미	칠레	2015		폴란드	2016
	페루	2016		슬로베니아	2015
	아르헨티나	2008		스페인	2012
중동	파키스탄	2009	아프리카	영국	2013
	인도	2015		남아공	2010